번호			고소작업대 종류, 이동·사용 시 준수사항과 과상승방지장치 안전기준
6			제137회 제2교시 6번, 학습용 답안 예시
			1. 개요
			· 고소작업대는 작업대·연장구조물·차대로 구성되어 사람을 작업 위치로
			이동시키는 설비(MEWP)로 안전인증대상기계임(산안법 시행령 제74조)
			· 주요 재해는 추락, 전도, 천장·구조물과 작업대 사이 끼임, 감전이므로
			종류별 특성 파악, 이동·사용 시 준수사항 이행, 방호장치 유지가 필요함
			2. 고소작업대 종류(위험기계·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6조)
			· 연장구조물 형식: 단일형, 텔레스코프형, 관절지브형, 사다리형, 가위형,
			조합식(회전식·비회전식)
			· 탑재·구동 방식: 차량 탑재형, 자체 추진형, 보행자 제어식, 레일 장착형,
			완전 수동조작형
			· 무게중심: A그룹(작업대 무게중심 투영이 항상 전복선 안), B그룹(전복선
			밖에 있을 수 있음)
			· 주행장치: 제1종(적재위치에서만 주행), 제2종(차대에서 조작해 상승 상태
			주행), 제3종(작업대에서 조작해 상승 상태 주행)
			3. 이동 시 준수사항(안전보건규칙 제186조 제3항)
			·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
			·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을 것. 단, 유도자를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
			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탑승 이동 가능
			· 이동통로의 요철 상태와 장애물 유무를 확인할 것

번호			4. 사용 시 준수사항(안전보건규칙 제186조 제4항)
6			· 안전모·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, 관계자 외 출입 방지 조치, 적정 조도 유지
			· 전로 근접 작업 시 작업감시자 배치 등 감전 방지 조치
			· 작업대 정기 점검, 붐·작업대 등 각 부위 이상 유무 확인
			· 전환스위치를 다른 물체로 고정 금지, 정격하중 초과 적재·탑승 금지
			· 붐 상승 상태에서 작업대 이탈 금지(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연결 시
			제외)
			· 설치 시 수평 유지, 아웃트리거·브레이크 사용(제186조 제2항), 작업 전
			별표 3 제11호 점검
			5. 과상승방지장치 안전기준(안전인증 고시 별표 7 제52호)
			· 대상: 옥내 사용 설계 고소작업대에 천장 등과 작업대 사이 끼임·충돌
			방지용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
			· 구조: 강재 강도 이상 재질로 견고하게 설치, 쉽게 탈락되지 않는
			수평형(안전바 등) 또는 수직형(방지봉 등)
			· 수평형: 상부 안전난간대에서 높이 5cm 이상에 설치, 전 길이에서 압력
			감지 구조
			· 수직형: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과상승 감지되도록 상부 안전난간대
			모서리 4개소에 60cm 이상 높이로 설치
			· 수직형·수평형 동시 설치 시 수직형은 2개 이상 설치
			· 사업주 의무: 작업대에 끼임·충돌 예방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
			설치(안전보건규칙 제186조 제1항 제6호)

번호			6. 현장 관리 방안
6			· 반입 시 안전인증 표시 확인, 차량 탑재형은 안전검사 유효 여부
			확인(시행령 제78조)
			· 과부하방지장치 무효화는 산안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반(2026.11.19.
			고용노동부 보도참고), 과상승방지장치 등 다른 방호장치도 무효화 금지
			· 작업계획 단계에서 천장·보·배관 등 상부 장애물과 전로 위치를 파악하고
			작업감시자 배치
			※ 공식 정답·채점기준이 아닌 학습용 예시임